## 참여 논문 1

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임의명정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배심단과 법관의 양형판단 차이 연구

# A Study on the Sentences of Judge and Jury in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cases of Jury Trial in Korea

홍수민(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, eisbeere88@gmail.com) 이수정(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, suejung@hanmail.net) 이정헌(연세대학교 법학과)

전소영(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)

재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권한이었다. 재판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은 법관의 결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/심신상실의 경우 피고인의 형을 감면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다.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형사재판 참여가 가능해진 지금, 본 연구는 먼저음주로 인한 심신미약/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전통적으로 배심제를 시행해 온 미국의 임의명정(Voluntary Intoxication) 변론 기준을 살펴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해진 모든 국민참여재판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/심신상실을 주장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관과 배심원의 양형에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. 그 결과 판단 주체와 주취감경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. 주취감경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배심원들이 법관들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서는 법관들이 내린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부과했다.

#### 연구목적

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와 전통적인 배심제 시행 국가인 미국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/심신상실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법관이 아닌 배심원, 즉 일반 국민들은 임의명정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양형감각을 지녔는지, 즉 법관들만큼 관대한지 아니면 법관들보다 더 엄중한 판단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.

## 연구방법

2008년도 5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1심에서 이루어진 배심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. 분석 가능한 총 케이스 수는 569개였으며 그 중 배심단의 양형 판단 기준인 다수의견을 알 수 없는 98 건의 판례는 분석에서 제외,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68건의 사건을 분석하였다. 분석 방법으로는 반복측정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과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관과 배심원의 양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.

# 연구결과

주취감경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배심원들이 법관들보다 평균 삼 개월 정도 더 관대한 처

분을 내렸다. 하지만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서는 법관들이 내린 형량보다 오히려 더 가중하여 양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임의명정을 가중요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내 형법과는 조금 다른 추세인데, 만일 대부분의 미국 주법처럼 임의명정에 따른 부당한 심신미약 주장을 가중요인으로 삼는다면 배심원들의 양형은 현저히 더 늘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.

Keywords : 국민참여재판, 주취감경, 임의명정, 심신미약, 양형판단